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용 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 용 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